

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6월 9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균

국 무 위 원
문 화 체 육 박 양 우
관 광 부 장 관

● **법률 제17409호**

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

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문화재매매업자 교육)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재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장에 제2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8(지정문화재 등의 기증)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다.

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재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,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.

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(施賞)을 하거나 「상훈법」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, 문화재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, 관리·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장의2(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7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장의2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

제80조의3(문화재돌봄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(이하 “문화재돌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
- 1. 지정문화재(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- 2. 등록문화재
- 3. 임시지정문화재

4. 그 밖에 역사적·문화적·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②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문화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

2.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·예방적 관리

3.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

4.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

5.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

6. 그 밖에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0조의4(중앙문화재돌봄센터)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

2.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

3.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

4.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의 지원

5.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·지원

6.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·협력 지원

7. 그 밖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0조의5(지역문화재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

2.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

3.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·물적 자원의 교류

4.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

5. 그 밖에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시·도지사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④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0조의6(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등) ①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.

-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고,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,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0조의7(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) ①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(이하 “전문교육”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
- ②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·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2조의3(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.
-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 복구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제8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취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22조의8 및 제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, ‘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’과 ‘문화재돌봄사업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,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- 가.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(제15조의2 신설).
- 나.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러한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(제22조의8 신설).
- 다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문화재, 등록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인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(제80조의3 신설).
- 라.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함(제80조의4 신설).
- 마. 시·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(제80조의5 신설).
- 바.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함(제80조의6 신설).
- 사.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(제80조의7 신설).
- 아.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(제82조의3 신설)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6월 9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군

국 무 위 원
문 화 재 육
관 광 부 장 관 박 양 우

●**법률 제17410호**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들어”를 “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로 한다.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)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